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2021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21.01.04~12.24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사전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신청·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육성전문 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 진흥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해당 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제도 관련 상담 안내

전국대표번호 : 1800-2012
(해당 권역 지원기관 자동 연결)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리스트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Tel. 033-749-3942 / Fax. 033-749-3900 Email. gwse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Tel. 070-4763-0130 / Fax. 070-4763-0120 Email.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명서동, 일용빌딩)	Tel. 055-266-7970 / Fax. 0303-0945-7945 Email.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Tel. 053-956-5002 / Fax. 053-267-5003 Email. se@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BYC빌딩 7층(지평동)	Tel. 062-383-1136 / Fax. 062-384-1137 Email.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5층 (동산동, 유창빌딩)	Tel. 053-956-5001 / Fax. 053-217-5003 Email. ucsr@hanmail.net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Tel. 042-223-9914 / Fax. 070-8787-7000 Email. c-cmail@hanmail.net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 (마드리드A) 509호		Tel. 044-867-9954 / Fax. 070-8787-7000 Email. c-cmail@hanmail.net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Tel. 051-517-0266 / Fax. 050-4926-0028 Email. info@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Tel. 02-365-0330 / Fax. 02-365-0440 Email. joyfulunion@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 (달동, 울산극동방송)	Tel. 052-267-6176 / Fax. 052-267-6177 Email.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주안동, 계림빌딩)	Tel. 032-446-9492 / Fax. 032-421-9585 Email. inseca@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 (전문건설공제조합)	Tel. 061-282-9588 / Fax. 0303-0955-9571 Email. sstreetree@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 (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Tel. 063-213-2244 / Fax. 063-213-2245 Email.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Tel. 064-726-4843 / Fax. 064-755-4843 Email. jejusen2015@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Tel. 041-415-2012 / Fax. 041-415-2013 Email. cnse1212@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Tel. 043-222-9001 / Fax. 043-223-9201 Email. cbse@hanmail.net



2021년도 사회적기업 안내

SOCIAL ENTERPRISE GUIDE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

목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 생산 및 영업활동 이윤창출 및 재투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요건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① 조직형태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시접수	신청	연중 일정 공고

1 조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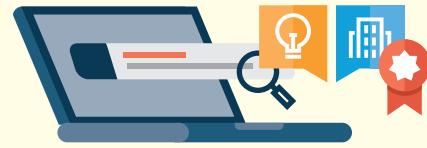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 사단법인	• 주식회사	• 합명회사	• 공익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재단법인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영농(영아)조합법인
	• 합자회사	• 합자조합	• 사회복지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2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 단,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
 -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 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 (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취약계층이란

• 저소득자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보호대상자	• 기타(1년 이상 장기실업자,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콜·도박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 아동 등)
•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장애인	• 장애인	• 갱생보호 대상자	
•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범죄구조피해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사회서비스란

• 교육	• 사회복지	• 청소년 사업시설관리	• 가사지원
• 보육	• 환경	•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	• 산림보전 및 관리
• 보건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 간병 및 개인서비스	• 기타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
-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
▶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매출액) * 단산 지원금,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	▶ 포함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 제외 :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

- 단, 자본 완전잠식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판단

6 정관의 필수사항

-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10가지)을 반드시 갖춰야 함
- 필수사항: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 ⑦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
 -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전문 인력 채용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